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7-14

광 주 고 등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6누476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 피항소인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제 1 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2016. 8. 31. 선고 2016구단10858 판결
변 론 종 결	2017. 5. 11.
판 결 선 고	2017. 6.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9. 1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처분내역) 기재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7-14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 '고쳐 쓰는 부분'과 같이 고쳐 쓰고, 아래 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고쳐 쓰는 부분 -

○ 제2면 제9행 내지 제10행 기재 '(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로,

○ 제2면 제13행 기재 'C 주식회사'를 '주식회사 C'으로,

○ 제2면 제20행 기재 '2015. 9. 15.'을 '2015. 9. 10.'로,

○ 제4면 제12행 기재 'D동'을 'I동'으로,

○ 제5면 제2행 기재 '2012. 1경부터'를 '2012. 1.경부터'로,

○ 제5면 제19행 기재 '2,912,276,903'을 '4,256,946,459'로,

○ 제6면 제9행 기재 '제4항에서'를 '제6항에서'로,

○ 제9면 제3행 기재 '의지할 밖에'를 '의지할 수밖에'로,

○ 제9면 제10행 기재 '구 지방세법'을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로 각 고친다.

○ 제5면 제22행 기재 '주식회사 C'을 삭제한다.

○ 제9면 제15행부터 제10면 제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원고는 2012. 6. 7. 새로 설립되어 창업의 외형을 갖추었으나 실질적으로는 C이 영위하던 기존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원고를 설립하여 원고에게 주요 거래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7-14

를 승계하여 준 것으로서 원고의 설립에 따른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단서에서 정하는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 포함)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임대 포함)하는 경우'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4호에서 정하는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로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부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본문에서 정하는 취득세 감면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할 것이다.

결국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취득세 감면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구 지방세법 제20조 제3항에서 정하는 '취득세를 면제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어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구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인 2012. 9. 4.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어야 하고, 그 가산세의 기산일은 2012. 9. 4.부터 60일이 경과한 다음 날일 2012. 11. 6.[1]이 된다. 그런데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1) 2012. 9. 4.부터 60일 되는 날은 2012. 11. 3.이지만 토요일이고, 2012. 11. 4.은 일요일로 공휴일이므로, 지방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2012. 11. 5.이 취득세의 신고·납부 기한이 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7-14

2012. 12. 7.을 가산세의 기산일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가산세의 기산일을 정당한 일자보다 더 늦은 일자로 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 제12면 내지 제13면 '별지 2 관계 법령'을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이 고쳐 쓴다.

2. 추가 판단 부분

○ 신고불성실 가산세에 관한 판단[2)]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지방교육세를 신고하면서 그 신고서에 각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산출세액을 정당하게 기재하였으나, 감면세액에 관한 판단을 그르쳐 최종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잘못 신고한 것이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나. 판단

1)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최종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제재인 데 비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이나 산출세액 등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제재인 점 등을 고려하면, 취득세의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산출세액을 정당하게 신고한 이상 감면세액에 관한 판단을 그르쳐 최종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잘못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취득세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두12505 판결 등 참조).

2)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제47조의3 제1항이 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이후 농어촌특별세에 대하여 무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의 적용이 배제되었고, 피고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농어촌특별세의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7-14

2) 살피건대, 을 제7,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2. 9. 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등을 신고함과 동시에 지방세 감면신청을 하면서, 취득세 등 신고서에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기재하였을 뿐 취득세,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액, 세율, 산출세액 등을 전혀 기재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단순히 감면세액에 관한 판단을 그르친 것이 아니라 취득세, 지방교육세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지방교육세의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창한

판사 최현정

판사 한종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7-14

별지 1.

목록(처분내역)

처분 일자	처분 내역	처분 금액(원)					
		세액				가산금	합계
		최종 원금	원금 내역				
			최초(감면)세액	최초 가산금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2015. 9. 10.	취득세	281,922,000	190,000,000	38,000,000	53,922,000	3,534,000	285,456,000
	지방교육세	26,292,200	19,000,000	1,900,000	5,392,200	353,400	26,645,600
	농어촌 특별세	12,196,100	9,500,000	-	2,696,100	176,700	12,372,800
	합계	320,410,300	218,500,000	39,900,000	62,010,300	4,064,100	324,474,40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7-14

별지 2.

관계 법령

■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7-14

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 구 지방세법(2013. 1. 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1호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 해당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2호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한다)

제153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제152조 제1항에 따라 지방교육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할 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51조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신고불성실가산세: 해당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2. 납부불성실가산세

■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어 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무신고 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하 "산출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이하 생략)

■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어 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3(과소신고 · 초과환급신고 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7-14

며, 「교육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이하 생략)

■ 지방세기본법

제23조(기간의 계산)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과 지방세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과 해당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을 따른다.

제24조(기한의 특례)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의 서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일 때에는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기한 또는 납부기한이 되는 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로 인하여 지방세정보통신망의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신고 또는 전자납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장애가 복구되어 신고 또는 납부를 할 수 있게 된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 구 지방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가산세의 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세는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1.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비율에 따른 가산세(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
2.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보다 적게 납부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회사의 연체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가산세(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한다)